

輸出自律規制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實證的 分析

金 永 春*

目 次

- I. 序 論
- II. 輸出自律規制의 歷史的 背景과 動因
- III. 輸出自律規制의 經濟的 效果
 - 1. 輸入國側의 經濟的 效果
 - 2. 輸出國側의 經濟的 效果
- IV. 輸出自律規制의 現況 및 實證的 分析
- V. 輸出自律規制의 政策的 含蓄性
- VI. 結 論

I. 序 論

1930年代와 40年代 初까지의 貿易政策은 競爭的이고 攻擊的인 傳統的 保護手段을 사용하였으 며, 그 후 GATT-IMF를 주축으로 關稅引下, 無差別의 原則, 最惠國待遇, 換率安定, 通商擴大 등의 圓滑한 國際協力에 의한 世界貿易環境이 호전됨에 따라 世界貿易規模가 擴大一路을 보여 왔고, 1970年代에 와서는 급변하는 世界經濟의 比較優位 構造變化와 美國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 들의 產業構造調整의 遲延, 景氣沈滯 등으로 自國産業의 保護을 위하여 防禦的이고 行政的 保護 措置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非關稅障壁(Non-Tariff Barriers:NTB)의 貿易制限에카니즘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自國의 輸入競爭産業을 保護할 目的으로 일반적인 關稅의 사용에서 非關稅障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新保護貿易主義傾向은 國際的인 談合의 結果로 不當한 方法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 例로 GATT의 規定을 濫用한 相計關稅, 反덤핑賦課金制度 등의 低次元的인(low-track) 制裁措置을 취하는가 하면, GATT規定을 교묘하

* 사범대학 상업교육과(Dept. of Commerce Education, Cheju Univ., 690-756, Korea)

게 피하여 적용하는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¹⁾와 같은 高次元的인(high-track) 이른바 灰色貿易規制措置(Grey Area Measures)을 도입하여 外國商品의 國內市場進入을 制限하는 事例가 1978년부터 63件, 1986年 末에 79件에서 1988年 中盤까지 261件으로 급격하게 增加하였고, 世界貿易量에 있어서도 약 10%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²⁾, 그 對象品目도 農産物, 纖維, 신발, 鐵鋼, 自動車, 輸送裝備, 電子製品, 數値制御工作機械 등 다양화되었다. 또한 석유과동으로 인하여 80年代에 접어들어서 世界經濟가 低成長期의 現象에서 발생한 斜陽産業의 失業問題와 이에 따른 壓力團體의 要求, 政府의 恣意的 措置 등에 의한 選別性 또는 差別性性格을 띤 新保護主義의 威脅은 GATT의 最惠國待遇의 原則을 違背하는 것이기 때문에 新興工業國들을 중심으로한 開發途上國들은 先進國들의 GATT規定 回避와 輸出自律規制와 같은 灰色貿易制限措置의 擴散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灰色貿易規制措置 가운데 輸入數量規制의 變形인 輸出自律規制協定은 GATT體制에 정면으로 背馳되는 制裁措置이기 때문에 貿易相對國의 貿易政策으로부터 雙務性, 非透明性, 그리고 差別的 數量制限의 要素를 배제하기 위한 GAT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상의 형태에 완고하게 집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貿易當事國들이 이러한 輸出自律規制協定을 선호하는 이유를 Jagdish N. Bhagwati³⁾는 地代移轉모델(Rent-Transfer Model)과 浸透性 保護모델(Porous-Prot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Michel Kostecki⁴⁾은 經濟的인 理由와 政治的인 側面에서 輸入國과 輸出國에서 선호하고 있는 屬性을 구별하여 전개하고 있다.

輸出自律規制는 輸出國이 貿易에 관한 統制·管理하는 그 사실에 의하여 다른 貿易制限形態와 구별된다. 이러한 行爲는 輸出國이 단독적으로 輸出規制를 공식적인 방법에 의하여 賦課하게 되고 그리고 技術적으로 그것을 修正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自律的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輸出自律規制가 전형적으로 輸出業者에 대한 일방적인 輸入規制를 위협하는 輸入國으로부터 壓力에 反應하는 것이다. 輸出에 관한 協商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輸出自律規制는 輸入國이 수출상품에 대한 價格引上을 輸出業者들에게 허용하는 補償的인 意味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기서 貿易規制와 연관된 被害를 輸出業者는 地代移轉形態로 포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輸入國의 國內 消費者들은 輸入關稅에 의한 것보다 輸出自律規制에 의해 더 많은 損失을 받고 있음을 實證的인 分析에 의하여 증명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經濟的 厚生費用을 增加시키고 있는 것

1) Michel Kostecki, "Export-Restraint Arrangements and Trade Liberalization," *The World Economy*, Vol. 10, No. 4, 1989, p. 425.

輸出自律規制와 유사한 형태로 市場秩序維持協定(Orderly Marketing Agreement), 輸出豫測, 輸出規制協定, 輸出카르텔, 價格監視體制 등이 있다.

2) Ibid., p. 440.

3) Jagdish N. Bhagwati, "VERs, Quid pro quo DFI and VIEs: Political-Economy Theoretic Analysis," in Douglas A. Irwin(ed.),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1), pp. 170-183.

4) Michel Kostecki(1989), op. cit, pp. 432-439.

으로 나타났다.⁵⁾

그러나 輸出自律規制의 使用은 政治經濟的의 論爭으로부터 설득력 있게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 親貿易性向의 行政府가 立法府로부터 保護主義 壓力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채택한 독창적이고 일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手段方法이라할 수 있지만 差別的이고 非公開的인 行態로부터 世界經濟秩序을 威脅함으로 政治的 批判은 피할 수 없다. 또한 經濟的으로는 數量制限의 性格을 가진 輸出自律規制는 國內經濟와 世界市場의 相對價格 移動을 저해하고 國際資源配分을 더욱 歪曲시키며, 比較優位의 變化에 기인한 조정문제를 완화시키는 것보다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經濟的인 利益問題에 있어서도 輸入國의 生産者들에게 나타나는 利益은 短期的으로 增加하는 반면에 輸入國의 國內消費者들에게는 많은 損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實證的인 分析에 의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輸出國의 측면에서는 厚生水準이 增加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協商過程에서 灰色貿易規制措置을 철폐할 것으로 合意을 도출하였으나 現在 輸出自律規制가 暗黙的으로 進行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實現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本稿의 研究目的은 그동안 貿易政策 道具로써 非關稅障壁의 形態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온 輸出自律規制에 관한 實體을 糾明하고,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輸入國側面과 規制된 輸出國(輸出自律規制協定을 체결한 國家) 및 非規制된 輸出國(輸出自律規制를 체결하지 않는 國家)側面에서 經濟理論的인 方法에 의한 分析과 연계시켜 輸出自律規制의 現況 및 實證的인 分析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향후 輸出自律規制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貿易手段을 分析할 수 있는 理論的 擴張의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政策立案者로 하여금 戰略的인 貿易政策의 方向 및 選擇에 기여하는데 있다.

本稿의 研究範圍는 第 2章에서 輸出自律規制의 貿易政策道具로써의 歷史的 背景과 發生動機 및 原因을 살펴보고, 第 3章에서는 輸入國, 規制된 輸出國, 非規制된 輸出國側面에서 나타나는 輸出自律規制의 經濟的 效果를 분석하고, 이러한 經濟的 效果를 第 4章에서 제시하고 있는 美國의 自動車, 纖維, 鐵鋼産業을 중심으로 輸出自律規制의 現況과 實證的 分析方法에 의한 結果를 연계시켜 전개하고, 第 5章에서는 輸出自律規制의 貿易政策 手段에 대한 政策의 意味을 제시하고, 效率性提高을 위한 方向을 제시한다.

5) Bee Yan Aw and Mark J. Roberts, "Measuring Quality Change in Quota-Constrained Import Markets: The Case of U.S. Footwea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21, 1986, pp. 45-60.
Alasdair Smith and Anthony J. Venables, "Counting the Cost of Voluntary Export Restraints in the European Car Market," in E. Helpman and A. Razin (ed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MIT Press 1991), pp. 187-220.

II. 輸出自律規制의 歷史的 背景과 動因

1. 輸出自律規制의 歷史的 背景

輸出自律規制는 日本의 國民性에서 그 歷史的 根源을 찾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가 1921년에 國際的인 移民法 制定으로 동양인의 이민에 대한 追放措置를 法制化하였을때부터 이민을 條件附로 日本은 불가피하게 自律的 制限을 選好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日本文化의 灰色性과 政면에서의 明確性 缺如와 관련시킬 수 있다.⁶⁾

1930年代 保護主義는 공공연하게 對向적이었고, 貿易政策의 道具로써 가장 최초로 문서화된 輸出規制의 歷史와 鐵鋼市場의 歷史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30年代 初 國際鐵鋼市場에 대한 輸出市場세어協定은 主要 鐵鋼輸出會社들로 구성된 國際鐵鋼카르텔에 의하여 이행되어졌다. 프랑스와 벨기에 鐵鋼會社들이 相關한 共謀的인 協定은 輸出企業들의 雙務的으로 체결된 쿼타를 條件으로 財貨에 대한 許可權을 발급하기 위한 權利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協定은 産業의 協定 또는 國際的인 産業間의 카르텔協定으로 확대하였고, 그 기간 동안은 대중적이었고 그때 政府間의 協力과 同意가 있었다. 이러한 談合的인 協定의 支持者들은 1930年代의 무질서한 시장에서의 秩序確立의 手段으로서 간주하였다. 그들은 많은 종류의 농산물과 제조된 상품 뿐만아니라 석탄에 이르기까지 적용하였고, 輸入業者들이 종종 外國 輸出業者에게 쿼타利益의 移轉을 항의하였던 것과 같은 論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⁷⁾ 유사한 輸出市場세어協定은 主要 鐵鋼企業들의 조직적인 國際鐵鋼카르텔에 의하여 鐵鋼貿易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初期의 輸出規制協定 기간동안 會員國들은 촉진된 수출카르텔로 인한 消費者厚生에 대한 損失을 인식하게 되었다.

貿易紛爭의 解決手段으로써 輸出自律規制의 최초 使用은 그 당시 日本이 美國의 높은 保護關稅⁸⁾에도 불구하고 낮은 貨金水準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936년에 協定된 美國에 대한 日本의 纖維輸出을 制限하기 위한 纖維協定이다. 日本의 綿織物 輸出은 1929년에 122萬평방야아드에서 1936년에는 729萬평방야아드로 급격하게 增加하였다. 그 해 年度 末까지 1937年度의 注文豫約이 이미 1億5千萬평방야아드에 달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美國의 纖維生産者들은 日本의 競爭波高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감하게 對策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1937年 美國과 日本이 오오사카에서 締結된 紳士協定은 두 國家의 産業들간의 協商結果을 가져왔고, 마침내 政府間의 合意를 도출하였다. 그 內容은 1937년에는 綿製品의 船積을 155百萬평방야아드를, 그리고 1938년에는 100百萬평방야아드로 制限하여 설정하였다. 1938年 末에 그 協定은 1939年과 1940년에 年間 100

6) Jagdish N. Bhagwati(1991), op. cit, p. 169.

7) Heinrich Heuser, *Control of International Trade* (London: George Routledge and Sons, 1939), pp. 112-119.

8) 美國은 1930年代 綿製品 輸入에 대해서 46%의 平均關稅를 毛織物製品에 대한 60%의 平均關稅 賦課는 金屬製品(35%), 化學製品(31%)에 비하여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百萬평방야아드를 허용하는 2年以上 동안 更新되어 졌다. 또한 다른 쿠틀타協定은 綿양탄자, 綿빌로로드, 코르텐바지 그리고 綿양말에 관하여 체결되었다. 그리고 1930年代 日本은 버어마, 인도, 오스트리아, 영국과도 유사한 協定을 체결하였다. 그 協定들은 報復性的의 關稅減免, 關稅引上을 못하게 하는 誓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相互바터協定을 포함하였다. 예를들어서 인도의 경우 日本의 輸出制限은 印度製品에 대한 日本의 購買力水準에 달려있었다. 이것은 1930年代의 經濟的 混亂期에 보편화된 貿易政策의 양상이었던 雙務的인 協定의 또다른 變形이다.⁹⁾

1955年末 日本은 美國에 많은 綿織物 輸出에 대하여 對內的으로 制限 賦課하였고, 1957年 1月에 日本은 自律的인 輸出統制에 관한 5個年計劃의 明細書를 美國政府에 제출하였다. 美國의 壓力은 특히 1956年의 農產物法과 같은 새로운 法의 規定에 관한 성과를 가져왔고, 다른 國家로부터 輸出을 制限하는 協定이나 纖維製品의 美國으로 輸入을 制限하는 協定을 체결하는 權限이 美大統領에게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러한 輸入을 制限하기 위한 緊急發動權이 있었다.¹⁰⁾ 纖維類에 대한 國際的인 規制는 先進國 纖維類産業의 構造調整을 통하여 同 部門의 漸進的인 自由貿易化를 이룬다는 명분아래, 1960年代부터 短期綿織物協定(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 SAT)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現在의 纖維類 貿易에 대한 規制는 多者間纖維協定(Multi-Fibre Arrangement; MFA)과 이에 근거하여 輸入國과 輸出國間에 체결된 雙務的 輸出自律規制協定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MFA에 의한 纖維類 交易規制의 特徵은 다른 제품에 대한 保護와는 달리 先進國의 纖維類 및 衣類産業들이 장기간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엄격한 保護을 받고 있다는 점과 美國, EC 등 先進國 相互間에는 纖維類 交易에 대한 規制가 없다는 점도 하나의 特徵이다.

美國의 1974年 通商法 201條는 産業構造調整을 목적으로 수입경쟁에 관련되는 産業被害救濟措置를 規定하고 있다. 同 規定의 發動要件은 輸入規制方式에 있어서 無差別性 등 GATT 第 19條(緊急輸入規制措置)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措置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크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첫째,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發動要件은 反덤핑 相計關稅措置와 같은 不公正貿易의 경우에 적용되는 發動要件보다 엄격하였다. 둘째, 美國 貿易委員會의 緊急輸入制限措置 勸告는 美國 大統領에 대해서 法的 拘束力을 갖지 못하였다. 셋째, GATT가 인정하는 輸出國의 報復 및 輸出國에 대한 補償을 回避하기 위하여 美國 大統領은 通商法 201條에 의하여 輸入規制措置를 취하기보다는 主要 輸出供給國들과 兩者協商을 통하여 輸出供給을 制限하는 방식을 빈번하게 채택하였다.

2. 輸出自律規制의 動因

輸出自律規制는 輸出國과 輸入國側面에서 經濟的으로 非效果的이면서 社會的 費用이 저렴하고

9) Kent Jones, "Voluntary Export Restraint : Political Economy, History and the Role of the GATT," *Journal of World Trade*, Vol. 23, No. 3, June 1989, pp. 128-129.

10) Martin Wolf, "Why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 Historical Analysis," in Ad Koekoek and L. B. Mennes (eds.),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Development*, (Routledge 1991), p. 87.

또는 經濟的으로 效果的이면서 經費가 많이 드는 貿易政策의 道具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國家間的 比較優位의 原則을 배제한 상황에서도 國際貿易를 할 수 있도록한 道具이다. 따라서 輸出自律規制는 政治的 經濟的 利害關係에 의하여 輸出國과 輸入國간의 貿易摩擦을 최소화하면서 市場原理에 의한 產業의 長期的인 調整을 阻害하지 않는 商業的 外交의 必需的인 方便으로써 간주되어져 왔다. 그러나 輸出規制는 GATT의 本質을 惡化시켜왔고 保護主義者 壓力의 安全裝置로써 行하여 왔다.

輸出國側面에서 輸出自律規制를 더 선호하게된 動機는 政治的인 利害關係에서라기 보다 經濟的인 理由에서 더 큰 比重을 두고 있다(〈表 1〉 參照).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輸出自律規制는 다른 手段에 비하여 매우 민감하게 賦課할 수 있고, 더구나 輸入國關稅와 쿼타보다 더 용이하게 修正, 除去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制限的인 裝置로써 輸出自律規制의 非透明性은 매우 현저하게 輸入國 關稅와 쿼타보다 自由貿易에 대한 力量의 神話를 유지하는데 더 쉽게 만든다.

셋째, 保護에 대한 政治的으로 관리할 수 없는 市場攪亂과 관련된 壓力의 結果로써 輸入國 貿易制限에 대한 補償은 위협적인 공격을 야기할 수 있는 補助金制度 보다 輸出自律規制를 통하여 國內的으로 管理하기가 더 용이하다. 즉 GATT規定 第 19條下에서 보다 덜 교란적이다. 여기서 補償은 輸入國에 대한 逆의 關稅讓許 形態을 가지고 있다.

네째, 輸入國의 政府로부터 壓力을 완화시킴으로서 貿易摩擦를 피할 수 있다는 점과 輸出自律

〈表 1〉 輸入關稅와 VER간의 主要 經濟的 爭點 比較

經濟的 爭點	VER	輸入關稅	VER 主要受惠者	VER 主要被害者
地代所得移轉	輸出業者	輸入國의 財政收入	協商한 輸出業者	消費者와 輸入國 政府(財政收入)
輸出國間的 競爭關係	制限的	거의 영향없음	높은 費用에 의해 協商한 輸出業者	輸入國의 消費者, 低費用下에서의 新規 輸出業者
國際的 寡占關係	增加가능	거의 영향없음	大規模 輸出業者	輸入國의 消費者, 輸出國에서의 新規 輸出業者
製品사이클	遲延	거의 영향없음	技術的으로 輸入國에서의 退步된 生産業者	輸入國에서의 消費者
貿易談合	가능	영향없음	協商한 輸出業者	輸入國에서의 生産業者
非規制 輸出國의 市場接近	VER의 非規制 輸出國에 대한 改善可能	...	VER에 적용받지 않는 輸出國	VER協定에 참여한 輸出業者와 輸出國 政府

規制協定은 일반적으로 수년간을 단위로 하여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同措置의 撤廢 내지는 緩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輸出國이 次期協定에서 輸出國의 수출패턴상의 變化를 반영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的 變경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輸出規制를 받는 産業은 輸出製品의 高級化 差別化 多樣化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輸入國側에서 輸出自律規制를 선호하는 動機는 經濟的인 理由에서 보다 政治的인 理由에서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表 2〉 參照). 첫째, 輸出自律規制는 GATT의 規定에 違背됨으로 협의를 은폐하기 위하여 輸出國側에서 自律規制를 행하게 하고 GATT의 規定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GATT規定에 의한 規制가 불가능하기에 灰色貿易制限措置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輸入國의 保護費用을 다른 貿易制限道具에 비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고, 貿易摩擦 및 報復危險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GATT規定 第 19條에 의한 輸入規制는 輸入國側에서 貿易制限에 따른 補償金支給規程에 의해 補助金支援이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輸入制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輸出自律規制는 輸入國政府가 政治的인 意思決定을 수립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전형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關稅賦課나 수입쿼타 등의 輸入規制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立法府의 議決을 거쳐야 하거나, 상당히 公開的인 行政節次를 밟아야 하는데 반하여 輸出自律規制는 은밀하게 교섭될 수 있으며 公開的인 政治的인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表 2〉 輸入關稅와 VER간의 政治的 爭點 比較

政治的 爭點	VER	輸入關稅	VER主要受惠者	主要被害者
輸入國의 保護費用	최소화	높다	輸入國 政府	輸入國의 消費者
透明性	낮다	높다	輸入國 政府	輸入國의 消費者
意思決定 負擔	낮다	높다	輸入國 政府	輸入國의 消費者
報復危險	최소화	높다	輸入國 政府	輸出業者와 輸入國 消費者
輸入國에서의 輸出業者의 영향	增加	無	輸出業者	...
輸出産業의 政府管理	增加	停滯	輸出國의 政府	輸出業者
輸入國에서 합법 적인 行爲 可能性	減少	높다	輸入國 政府	輸入國 消費者
輸出業者의 利益分配	상당함	無	輸出業者와 輸出國 政府	輸入國 財政

다른 한편으로 輸出自律規制가 保護主義의 게임내에서 外國競爭者들을 적극적으로 協定에 접근하도록 하는 동기를 마케팅 전략적인 방법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利益分配의 協力的인 同業者로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輸出自律規制는 關稅를 선

호하지 않는 輸入國들이 貿易規制의 結果로부터 발생한 地代所得의 移轉形態로 제공하기 때문에 外國競爭企業들을 공모적인 協定에 의하여 더욱 유순하게 만든다.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 地代所得이 輸出企業의 販賣收益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예를들어서 1980年代 中盤 EEC鐵鋼市場에 輸出自律規制를 도입한 결과 價格上昇이 14-16%의 범위에 있었고, 1984년에 美國市場에서의 日本 自動車 價格上昇은 13-20%였다. 또한 輸出業者들은 輸出自律規制를 지지하여 더 구체적인 共謀을 강화하는 기업들과 쿼타地代所得의 利益을 할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美國市場에 그들의 自動車 輸出에 관한 수입쿼타 또는 關稅을 부과하는 대신에 輸出自律規制를 로비에 의해서 선호하는 반면에 日本의 自動車 製造業者들은 美國의 國際的인 딜러協會로부터의 支援에 의존하고 있었고, 美國의 많은 自動車生産業者들은 日本의 企業들과 合作投資 形態를 원하였다.

둘째, 共謀行爲로부터 利益이 발생한다. 輸出自律規制는 제한적인 貿易水準의 設定과 競爭을 制限하기 때문에 國內企業과 外國企業들의 兩者의 利益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輸出自律規制는 기업들이 다른 방법으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價格과 利益에 관한 결과로 공모적인 방법에서 相互作用하기 위한 價格으로 競爭的인 企業들을 조장하며, 生産者協會 또는 輸出自律規制를 이행하는 집단에 의하여 조직된 수출카르텔을 창출한다.¹¹⁾ 輸出自律規制는 또한 第3國의 供給者들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效果를 가지고 있다. 美國과 日本間의 自動車에 관한 輸出自律規制는 독일,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自動車 生産業者들의 行爲에 대하여 지대한 效果를 가지고 있다. 비록 生産業者들이 그들의 美國 自動車 市場의 세어를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그 증가의 일부분을 品質向上으로 약 1/3정도까지 그들의 輸出價格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도입 되어졌다.

셋째, 輸出自律規制는 위협적인 요소를 가진 강력한 武器이다. 外國 供給業者들의 販賣收益을 유지하기 위한 輸出自律規制의 目的은 기업간의 行爲에 대한 암시가 거의 없는 保護主義者 手段이다. 이러한 범주에서 輸出自律規制는 非透明的이고 保護主義者 行爲의 威脅에 기초가 된다. 輸出自律規制下의 共謀行爲는 가끔 위협에 의하여 조장 되어진다. 外國企業 또는 産業의 團體들은 保護主義者들의 行爲의 威脅에 의하여 수반되어지는 요구 때문에 輸出自律規制協定을 기꺼이 수용되질 수 밖에 없다. 특히 外國競爭企業의 提訴에 따른 開發途上國의 國內企業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合法的인 訴訟節次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위험한 外國競爭者들과 結束하게 된다. 또한 輸出自律規制는 反덤핑 또는 相殺手段의 賦課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國家들이 그들의 貿易파트너들과 협조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대적인 국제관계를 원하지 않고 보다 유화적인 것을 더 선호한다.

네째, 協力の 經路 樹立이다. 輸出自律規制는 일반적으로 공모행위를 위하여 制度的인 組織을

11) Kala Krishna, "Trade Restrictions as Facilit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26, 1989, p. 251.

수립한다. 協定當事者들은 週期的인 協議, 情報交換, 直接投資, 技術移轉, 合作投資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經路를 창출한다. 輸出自律規制의 履行에 있어서 기업들의 직접적인 參與 또는 産業의 團體들은 相互利益을 위하여 협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노력하게 된다.¹²⁾

끝으로, 政府의 強要이다. 輸出自律規制協定은 政府間의 協定, 民間團體間協定, 그리고 政府와 民間團體間의 協定으로 체결되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輸出自律規制協定이 政府支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協定들을 강화시켜왔다. 그것은 私的인 共謀의 協定은 높은 施行費用을 가지고 있고, 不正行爲의 威脅과 부당한 所得의 問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적인 결과로부터 탈선행위의 가능성은 政府가 게임의 法則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때 상당히 減少한다. 그리고 政府의 支援된 輸出自律規制는 貿易政策手段으로 고려되어지고, 일반적으로 競爭法을 條件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 예를들어서 EC委員會는 EC市場에 대한 工作機械를 輸出을 制限하는 EEC와 日本間의 輸出自律規制가 로마조약 第 85條에 의하여 規定된 競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체결되었다.

先進國들이 GATT規定 第 19條(緊急輸入規制措置條項) 發動에 의하여 輸入의 急増으로 인한 自國産業의 被害를 구제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輸入規制措置를 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輸出自律規制 등의 雙務協定方式을 통하여 주요 輸出國을 선별적으로 拘束하는가 이다.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로써 協商國들은 GATT 第 19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GATT와 같은 국제기구의 승인 또는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자유롭게 意思決定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交易當事國들로 하여금 GATT規定을 따르기보다는 兩者間協商을 선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輸出國에 대한 報復權리의 賦與 및 이에 따른 輸出國에 대한 補償義務는 수입경쟁으로 인하여 構造調整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協商國들로 하여금 GATT 第 19條를 무시하는 원인이 되었다.

Ⅲ. 輸出自律規制의 經濟的 效果

1. 輸入國側의 經濟的 效果

過去의 輸出自律規制의 理論的 分析에 의한 經濟的 效果는 貿易制限의 서로 다른 형태들간의 同質성과 非同質성에 관해서 兪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Wendy E. Takacs(1978), Rodney E. Falvey(1979), Carlos A. Rodriguez(1979)¹³⁾는 完全競爭의인 條件下에서 關稅 또는 쿼타와 輸出

12) Michel M. Kostecki, "Marketing Strategies and Voluntary Export Restraints," *Journal of World Trade*, Vol. 25, No. 4, (August 1991), pp. 93-95.

13) W.E. Takacs, "The Nonequivalence of Tariff, Import Quotas, and Voluntary Export Restrai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 1978, pp. 565-573.

R.E. Falvey, "The Composition of Trade within Import-Restricted Product Catego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1979, pp. 1105-1114.

C. A. Rodriguez, "The Quality of Imports and the Differential Welfare Effects of Tariffs,

自律規制가 서로非同質的인關係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반하여 T. Murry, W. Schmidt and I. Walter (1983)¹⁴⁾는 輸出自律規制와 수입쿼타에 관한 貿易效果을 분석하는 過程에서 非規制된 生産業者의 超過供給函數 彈力성과 支配的 獨占者의 市場占有率에 근본적으로 의존함으로 수입쿼타와 輸出自律規制는 서로 同質的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J. S. Lizondo (1984)¹⁵⁾은 完全競爭市場下에서 輸入障壁과 輸出規制에 의한 國內相對價格의 同質性은 필수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輸入規制로 발생한 財政收入의 支出은 최종적으로 產出에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同質性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輸出自律規制에 대한 經濟的 效果分析은 輸入國 消費者의 厚生效果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本稿에서는 特定 財貨(X財: 輸入可能財)에 대하여 輸出自律規制措置를 도입함으로써 輸入國의 特定 財貨(X財)을 사용하는 製造業者들에게 미치는 經濟的 效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分析方法은 幾何學的分析에 의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輸出自律規制는 전형적으로 輸入國이 關稅 또는 쿼타를 부과하는 위험을 外國의 製造業者들의 輸出에 관한 쿼타를 적용하는 輸出國의 政府에 관련시킨다. 또 輸出自律規制는 外國競爭을 위축시키고, 보다 우수한 제품 또는 보다 경쟁적인 價格베이스로 판매되고 있는 外國生産業者들에게 損害를 초래하도록 國內의 非效率的인 生産業者들에게 市場進入을 허용한다. X財에 輸出自律規制를 부과시킴으로써 輸入國의 輸入量이 減少함에 따라 國內의 X財 需要者들은 制限된 供給에 대하여 상호간의 구매경쟁으로 外國 輸入價格 上昇 과 國內 X財 製造業者들의 價格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價格上昇은 國內生産業者들에게는 利益이 발생하지만 X財 投入의 關聯産業에게는 損害를 가져다 주게 된다. 이것은 輸入國의 X財 投入에 대하여 國內製品으로 대체하도록 自國 製造業者들에게 자극하고, 國內 X財 供給業者들은 상승한 價格으로 產出을 增加시킴으로써 발생한 增加된 需要와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은 X財 使用의 關聯産業에 대하여 生産費用을 增加시키는 요인이 된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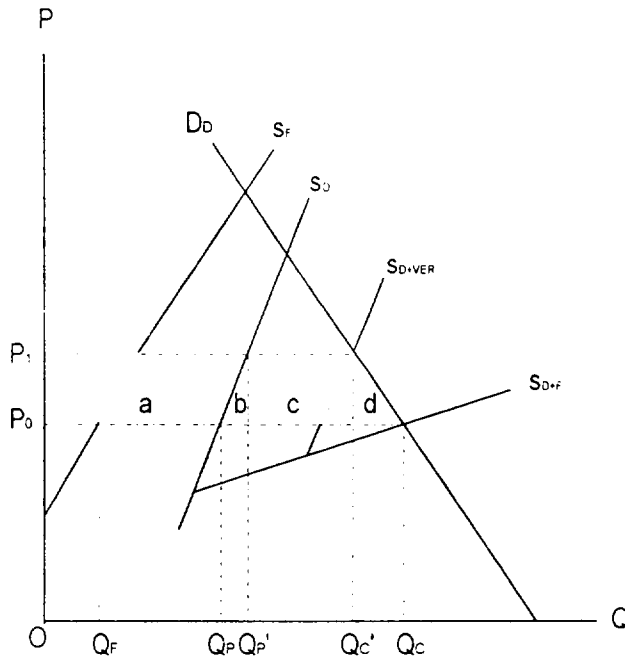
<그림 1>은 完全競爭市場下에서 輸入國이 X財에 대한 輸出自律規制措置를 부과시킴으로써 輸入國측의 X財 使用關聯産業에 미치는 經濟的 效果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방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輸入國은 國際市場에서 價格順應者의 位置에 있으며, 2國-2財-2要素의 Heckscher-Ohlin-Samuelson 모델에 의하여 各國들은 要素賦存에 따라 特化하는 것을 假定한다. 여기서 X財에 대한 輸入國의 需要를 D_D , 自由貿易에 의한 輸入國의 總供給은 S_{D+F} (國內供給 S_D 와 外國供給 S_F 의 合計)로 표기한다. 그리고 自由貿易下에서 X財의 價格은 P_0 이고, 輸入國에서 구매된 X財의

Quotas and Quality Controls as Protective Devic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2, 1979, pp. 439-449.

14) Tracy Murray, Wilson Schmidt and Ingo Walter, "On the Equivalence of Import Quotas and Voluntary Export Restrai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4, 1983, pp. 191-194.

15) J.S. Lizondo, "A Note on the Nonequivalence of Import Barriers and Voluntary Export Restrai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6, 1984, pp. 183-187.

16) Jonathan Haughton and Balu Swaminathan, "The Employment and Welfare Effects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Steel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1955-1987," *Journal of World Trade*, Vol. 26, No. 1, (February 1992), pp. 101-115.



<그림 1>

總量은 Q_F 이다. 이러한 數量은 Q_P 가 國內에서 生産되어지고, Q_F 는 外國生産者들에 의해서 供給되어진다.

따라서 輸出自律規制協定이 체결되어지면 外國供給은 量的으로 制限되어지고, 總供給은 S_{D+VER} 에 의하여 표기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國內價格이 P_1 으로 상승하고 數量은 Q_C' 로 X財의 사용을 위한 消費가 減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輸出自律規制의 賦課에 따른 經濟的 厚生效果는 領域 a+b+c+d로 표기된 X財의 使用製造業者들에 대한 厚生損失로써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領域 a는 輸出自律規制의 賦課로 國內價格이 P_1 로 상승함으로 外國의 輸出供給業者와 國內生産業者들에게 나타난 所得이 國內 X財 使用製造業者로부터의 再分配效果이다. 또한 國內生産業者(X財 供給業者)의 國內生産增加에 따른 生産費增加로 資源配分の 損失을 포함한다. b+d는 X財投入關聯産業의 使用抑制效果 및 生産減少效果이다. 역시 領域 c는 輸出國으로의 地代移轉效果로써 X財을 사용하는 關聯産業의 生産을 減少시키는 效果을 나타낸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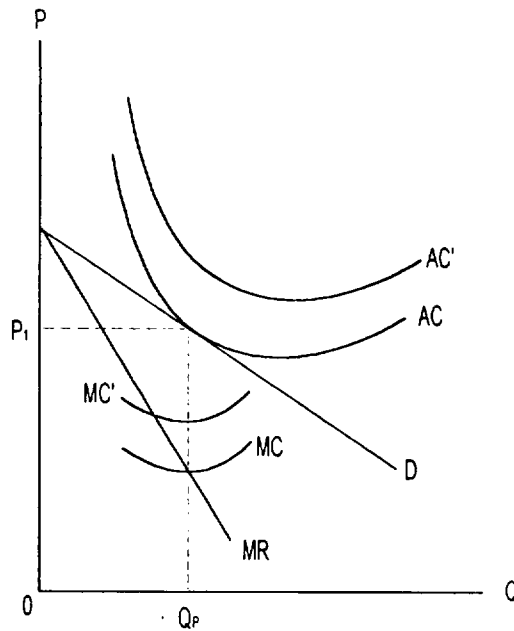
輸出國에서의 輸出自律規制措置는 결과적으로 輸入國의 X財 價格引上 效果로 X財 使用關聯産業의 製造業者들에게 費用을 增加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 만약 X財 投入關聯産業의 製造業

17) C. Hamilton,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n Asia: Tariff Equivalents, Rents and Trade Barrier Formation," Revised Version of Seminar Paper No.276,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VER in D. Greenaway(ed.), *Current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Macmillan Publishers Ltd., 1985, pp.104-107.

Jaime de Melo and P. A. Messerlin, "Price, Quality and Welfare Effects of European VERs on Japanese Auto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2, 1988, pp.1527-1536.

者들이 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輸出市場에 경쟁한다면 또는 外國供給이 완전탄력적인 外國 生産者들과의 경쟁에서 國內市場을 위해서 生産한다면 높은 生産費用의 負擔은 X財을 사용한 製品의 輸入國의 生産을 減少시키게 된다. 그 결과로써 厚生의 總費用은 輸入國 生産者들에게 돌아간다. X財을 사용한 製造業者들에 의한 生産減少는 輸出損失과 일치하고, 輸出競爭産業과 輸入競爭産業에 있어서의 輸入增加와 일치한다.

〈그림 2〉는 不完全競爭市場下에서의 X財 使用 關聯製造業者들이 國內經濟에서 운용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輸出自律規制措置下에서 X財 投入의 費用增加는 各 企業에 대한 生産費用을 增加시킨다. 이것은 다양화된 製品差別化가 費用增加 현상과 같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높은 費用에서의 生産과 보다 낮은 數量을 生産함으로써 市場調整을 야기시킨다. 유사한 결과로 X財는 輸入國에서의 總産出은 떨어질 것이고 價格은 상승한다. 그리고 厚生費用은 生産者들과 X財 使用 製品의 消費者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욱이 製造業者의 數가 줄어들므로써 그 市場은 더욱 寡占的인 競爭體制가 될 것이고 輸入規制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¹⁸⁾



〈그림 2〉

18) Joseph McKinney and Keith A. Rowley,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s on Steel Imports: Policy Development and Sectoral Effects," *Journal of World Trade*, Vol. 23, No. 3, (June 1989), pp.72-81.

Robert Carbaugh and Darwin Wassink, "Steel Voluntary Agreements and Steel-Using Industries," *Journal of World Trade*, Vol. 25, No. 4, (August 1991), pp.72-86.

Richard Harris, "Why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re Voluntar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8, 1985, pp.799-809.

2. 輸出國側의 經濟的 效果

輸出自律規制措置는 輸出國에 의해서 管理되어지고, 差別的이기 때문에 2國-2財의 傳統的인 貿易理論에 의한 分析方法은 限界性을 포함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輸出國側面을 規制된 輸出國(B國)과 非規制된 輸出國(C國)으로 분류하고, 輸入國(A國)은 輸出自律規制措置를 체결한 國家로부터의 輸入과 그렇지 않는 國家로부터 輸入을 행하는 것으로 假定하다. 따라서 完全競爭市場下에서 3國-2財(Y財=輸出財, X財=輸入財)의 프레임웍에 의해서 一般均衡分析의 方法으로 분석한다. 輸出自律規制는 A國과 B國간에 체결되어지고, B國과 C國은 X財를 輸出하는 것으로 假定하고, A國의 輸入規制에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假定한다. 그리고 輸入國(A國)의 輸入量과 國內價格比率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假定하고,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各國의 오퍼曲線은 탄력적인 것으로 假定한다.

Jagdish N. Bhagwati and Richard A. Brecher¹⁹⁾는 一般均衡分析에 의한 2國-2財의 傳統的인 貿易理論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輸出自律規制의 賦課로 輸出國은 厚生水準이 향상하는 반면에 輸入國에 있어서는 오히려 交易條件의 惡化로 厚生水準이 낮아지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厚生水準의 結果는 貿易制限의 目的과 財政收入 및 翫地代所得의 結果에 따른 支出의 方法에 중요하게 의존하게 된다.

輸出規制를 행하도록한 B國(規制國)과 非規制國인 C國間의 厚生水準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의 오퍼曲線에 의한 一般均衡分析으로 전개한다. B國의 오퍼曲線 OB와 C國의 오퍼曲線 OC와의 合인 O(B+C)의 오퍼曲線과 A國의 오퍼曲線 OA와의 交點인 S點은 自由貿易均衡下에서의 均衡點이다. 이때 線 OS(그림에서 나타나지 않는)은 自由貿易條件에서 交易條件을 나타낸다. A國에서 輸出自律規制의 賦課로 HG에 해당하는 量을 규제함으로써 輸出國들의 오퍼曲線은 (B+C)'로 이동하되 數量規制에 의해 Q點에서 왜곡된 OQV의 오퍼曲線이 된다. 美國의 X財 輸入量 OH는 B國의 ON 輸出과 C國의 OM 輸出量의 合과 일치한다. A國은 B國에 대하여 輸出自律規制를 부과함으로써 B國과 C國의 輸出業者들은 A國으로부터 地代所得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輸出自律規制 賦課에 의해서 결정된 交易條件은 OV線이 된다. 그 결과 A國의 交易條件은 惡化된 것으로 나타난다.

B國의 輸出規制에 의해서 A國으로부터 허용된 B國의 輸出協商 數量은 ON보다 낮아진다. 반면에 C國으로부터 A國에 추가적인 輸出을 자극하게 되고, B國의 輸出이 減少된 부분만큼 C國의 輸出은 增加하고, 交易條件은 OQ에서 OV로 개선된다. 따라서 C國의 厚生水準은 L點에 접하는 貿易無差別曲線에 의해서 나타난다. B國의 오퍼曲線은 R點에서 굴절된 ORU이다. B國의 厚生水準은 오퍼曲線 ORU와 OV가 交차하는 點에서 U點을 통과하는 貿易無差別曲線에 의해서 나타

19) Jagdish N. Bhagwati and Richard A. Brech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us Import Restrictions: A Welfare-Theoretic Comparison," in Douglas A. Irwin(ed.),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IT Press 1991), pp. 184-196.

代替效果보다 크게 될 때에는 B國이 輸出自律規制措置下에서 더 유리하다. 따라서 B國의 經濟的 厚生效果는 불확실하다.²⁰⁾

그러나 輸出業者들이 輸入國의 關稅 또는 쿼타보다 輸出自律規制를 더 선호하는 확실한 이유는 輸出自律規制는 國內價格과 外國價格間의 差異에서 발생된 財政收入의 일부분이 輸出業者들에게 移轉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輸出自律規制로 인하여 輸出業者들의 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독점적인 행위로 輸出業者들에게 더 많은 利益을 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輸出自律規制로 輸入國의 國內生産者들에게 利益을 增加시키고 또한 國內生産者들이 경쟁적인 행위를 유지한다면 外國生産者들의 利益을 減少시킬 수도 있다. 輸出自律規制下에서 輸入國의 國內生産者들은 外國生産者들의 反作用에 관계없이 과점적으로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國內生産者들은 價格을 상승시킬 수 있고, 많은 利益을 득할 確率이 높아진다. 輸出이 너무 制限의이지 않다면 이러한 價格上昇은 外國生産者들에게도 利益을 제공하게 된다.²¹⁾

반면에 輸出自律規制의 賦課에 따른 輸出國側의 經濟的 效果面에 있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生産과 財貨에 대한 限界收入이 增加하는 경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輸出規制國의 影響으로 非規制國으로 확산될 확률이 높으며, 生産要素의 限界收入이 減少하게 되고, 資源配分の 歪曲에 따른 費用增加와 生産要素의 地代所得이 減少하게 되므로 生産要素 所有者들의 厚生水準을 減少시키게 되고, 輸出國의 産業을 위축시키게 된다.²²⁾

IV. 輸出自律規制의 現況 및 實證的 分析

1980年代에 진입하여 70年代末 석유과동으로 인한 高物價, 高金利, 高달러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世界景氣沈滯, 유럽의 높은 失業率, 先進國間의 貿易不均衡擴大, 産業構造調整 失敗, 특히 그 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美國의 財政 및 經常收支赤字 등으로 世界經濟가 不均衡局面으로 빠져들면서 世界貿易秩序는 保護主義에 휩싸이게 되어 GATT體制를 크게 위협하게 되었다. 특히 GATT體制를 벗어난 輸出自律規制와 市場秩序維持協定(OMA) 등 灰色貿易制限措置의 濫發 및 反덤핑關稅制度, 相計關稅制度의 濫用 등이 GATT의 位相을 위축시켰으며, 경제의 불투명화가

20) Elias Dinopoulos and Mordechai E. Kreinin, "Import Quotas and VERs: A Comparative Analysis in a Three-Country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26, 1989, pp. 169-178.

21) Yoshiyasu Ono, "Profitability of Export Restrai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6, 1984, pp. 335-343.

R. J. Sweeney, E. Tower and T. D. Willett, "The Ranking of Alternative Tariff and Quota Policies in the Presence of Domestic Monopol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 1977, pp. 349-362.

22) Jaime de Melo and L. Alan Winter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nd Resource Allocation in Exporting Countr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4, No. 2, 1990, pp. 209-233.

Jaime de Melo and L. Alan Winters, "Do Exporters gain from VER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 pp. 1331-1349.

진전되면서 保護貿易의인 地域主義의 副作用에 대한 우려가 검증되어왔다. 한편 1986年 3低 現狀에 힘입어 신흥공업국의 높은 경제성장의 실현으로 價格變數의 급격한 變化와 기술혁신의 급진전은 世界貿易構造의 變化를 초래함에 따라 保護貿易主義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先進國들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한 貿易規制措置인 非關稅障壁中에서 反덤핑關稅賦課가 1277件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相計關稅賦課 320件, 그리고 輸出自律規制가 120件과 緊急輸入制限措置 23件的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3) 參照).

〈表 3〉 主要 先進國의 貿易障壁 發動 現況(1980~1986年)

(單位: 件數)

	反덤핑關稅賦課		相計關稅賦課		緊急輸入制限 (GATT 19條)	輸出自律規制 (VER)
	調 査	措置賦課	調 査	措置賦課		
미 국	350	129	281	96	5	48
호 주	416	138	20	7	4	1
캐나다	320	152	11	4	4	7
E C	280	122	7	3	10	58
일 본	1	—	1	—	—	6
합 계	1277	541	320	110	23	120

資料: Bernard M. Hoekman and Michael P. Leidy, "Dumping, Anti-dumping, and Emergency Protection", *Journal of World Trade*, Vol. 23, No. 5, October 1989.

輸出自律規制措置適用 國家 가운데 EC가 58件으로 가장 높고 美國이 48件, 캐나다 7件 등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GATT規定에서 인정하고 있는 緊急輸入制限措置가 23件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先進國들이 緊急輸入制限措置를 회피하고 灰色貿易制限措置인 輸出自律規制의 利用을 상대적으로 增加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GATT規定 第 19條의 主要 問題點인 發動基準의 不明瞭性, 發動期間 및 發動範圍의 具體性 缺如, 選別適用의 導入問題, 多者間 監視機構 不在, 補償 및 報復措置의 問題에 따른 복잡한 節次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과 輸出制限措置와 같은 GATT規定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措置들은 GATT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 GATT規定 第 19條에 의해 輸出制限措置를 關稅 대신에 수용하는 過程에서 協商國들은 직접 거절할 수 없었던 保護主義的 要求에 대해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²³⁾과 셋째, GATT規定 第 19條의 緊急輸入制限規制 措置에 의한 適用은 補償金 問題 등의 코스트(cost) 發生이 輸出自律規制措置에 비하여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⁴⁾ 따라서 輸出自律規制協定은 우루과이라운드의 協商(1986年

23) Jagdish Bhagwati, *Protectionism*, MIT Press, 1988, p. 57.

24) Alasdair Smith and Anthony J. Venables (1991), *op. cit.*, pp. 187-219.

9月~) 전후로하여 집중적으로 체결하여왔고, 그 品目の 對象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適用對象國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⁵⁾

〈表 4〉 先進國의 NTB 規制下의 輸入比重

(單位 : %)

品 目	NTB 全體		Quota		VER, OMA		기타 NTB ¹⁾	
	1981	1988	1981	1988	1981	1988	1981	1988
식 료 품	34.0	36.9	22.8	23.3	0.1	1.1	28.9	29.2
농 업 천 연 원 료	3.7	11.9	2.7	2.7	0.0	0.0	2.7	2.7
광 학 과 금 속	14.3	22.6	4.2	17.0	2.0	14.6	11.2	17.4
연 료	42.0	15.4	12.1	12.0	0.0	0.0	12.4	12.3
화 학 제 품	12.4	13.2	8.3	8.4	0.0	0.0	8.7	8.8
제조업(화학제외)	18.3	20.2	12.0	12.1	10.1	10.4	12.2	12.4
全 體	24.2	19.9	11.8	12.9	5.0	6.1	13.1	13.7

註 : 1) 關稅型措置, 輸入預託金 및 公課金, 反덤핑關稅, 相計關稅, 輸入自動承認 및 輸入監視 措置를 除外한 것임.

資料 : UNCTAD, Data Base on Trade Control Measures.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先進國의 輸入規制 現況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年과 1988年의 先進國 總輸入中 非關稅障壁(NTB)規制下의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import coverage ratio)을 비교한 것에 의하면, 製造業部門에 있어서 纖維類, 鐵鋼, 自動車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그 比重도 增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年代의 中盤 國際貿易秩序의 潮流가 新貿易秩序 模索期을 맞이하여 先進國의 非關稅障壁에 의한 輸入規制가 1981年 24.4%에서 1988년에는 19.9%로 減少하고 있는 현상(반면에 製造業部門에는 增加)인데도 불구하고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輸入規制는 전체 1.1% 增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EC와 美國에 의하여 非關稅障壁에 의한 輸入規制를 주도하여 왔기에 〈表 5〉에 나타난 EC와 美國의 主要 產業別 貿易障壁 現況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²⁶⁾ 이 資料는 EC와 美國의 1986年 輸入額을 기준으로 하여 1981年과 1988年 非關稅障壁(NTB)의 貿易範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EC와 美國의 두 地域 非關稅障壁 合計는 1988년에 있어서 이러한 手段이 거의 70%(96.39십억달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輸出自律規制措置에 있어서 1981年과 1988年을 비교하여 보았을때 EC는 60.9%, 美國이 19%로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規制 規模面에 있어서는 美國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貿易障壁(NTB)에서 輸出自律規制(VER)이 차

25) Michel Kostecki(1989), op. cit, pp.442-450.

26) Heinz Gert Preusse, "Voluntary Export Restraints-An Effective Means against a Spread of Neo-Protectionism?," *Journal of World Trade*, Vol. 14, No. 3, (March 1991), pp.9-11.

〈表 5〉 EC와 美國의 主要 産業別 貿易障壁의 現況

(EC의 경우)

(單位 : 백만달러, %)

	1986年		1981年				1988年				
	輸入額 (M)	非關稅障 壁(NTB)	VER	$\frac{NTB}{M}$	$\frac{VER}{M}$	$\frac{VER}{NTB}$	NTB	VER	$\frac{NTB}{M}$	$\frac{VER}{M}$	$\frac{VER}{NTB}$
總輸入額	292,006.2	42,080.5	5,764	14.4	2.0	13.7	44,465.8	9,277	15.2	3.2	20.8
産業別	197,649.0	19,558.8	4,818	9.9	2.4	24.6	21,880.6	8,341	11.1	4.2	38.1
總輸入額											
織物	21,717.5	11,239.8	—	51.8	—	—	11,181.0	550	51.5	2.5	4.9
鐵鋼	8,249.0	3,638.3	2,697	44.1	32.7	74.1	3,679.5	2,732	44.6	33.1	74.2
自動車	13,327.5	1,948.3	1,948	14.6	14.6	100	2,832.5	2,832	21.2	21.2	100
其他	152,445.8	2,439.1	2,183	1.6	1.4	89.5	3,917.4	2,929	2.6	1.9	74.8

(美國의 경우)

(單位 : 백만달러, %)

	1986年		1981年				1988年				
	輸入額 (M)	非關稅障 壁(NTB)	VER	$\frac{NTB}{M}$	$\frac{VER}{M}$	$\frac{VER}{NTB}$	NTB	VER	$\frac{NTB}{M}$	$\frac{VER}{M}$	$\frac{VER}{NTB}$
總輸入額	365,414.6	49,057.7	28,431	13.4	7.8	57.9	51,927.1	33,826	14.2	9.3	65.1
産業別	302,440.3	47,934.8	28,431	15.8	9.4	59.3	49,642.0	32,995	16.4	10.3	66.5
總輸入額											
織物	22,834.0	16,013.8	—	70.1	—	—	16,526.5	—	72.4	—	—
鐵鋼	9,790.2	3,485.7	—	35.6	—	—	6,502.5	6,381	66.4	65.2	98.1
自動車	71,657.6	24,336.0	24,336	34.0	34.0	100	24,335.0	24,336	34.0	34.0	100
其他	187,320.3	917.4	904	0.5	0.5	99	2,278.3	2,278	1.2	1.2	100

資料 : UNCTAD/ITP/24.12 March 1990.

지하고 있는 총체적인 세어는 EC에 있어서 13.7%에서 20.8%로 증가하고 있으며, 産業部門에 있어서 이러한 증가는 24.6%에서 38.1%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C의 경우 1988년에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總輸入 가운데 自動車産業과 鐵鋼産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각각 30.5%와 29%의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輸入規制 對象國家는 日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開發途上國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 總輸入에 대한 非關稅障壁의 比重은 1981년에 비하여 1988년에는 5.9%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輸出自律規制措置에 의한 增加率(VER/NTB)은 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의 VER/NTB 세어가 57.9%인 반면에 1988년에는 65.1%로 非關稅障壁에서 차지하고 있는 輸出自律規制의 세어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은 貿易政策 道具의 普遍性을 나타낸다. 특히 自動車輸入은 非關稅障壁에 의한 輸入規制 가운데 輸出自律規制措置의 手段

輸出自律規制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實證的 分析

에 의해 總體的인 輸入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美國의 全體 輸出自律規制措置에 의한 輸入規制는 鐵鋼, 自動車, 工作機械에 차지하는 比重이 91%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總輸入에서 輸出自律規制가 차지하는 比重은 점차 減少하는 추세에 있으나 産業別部門에 있어서는 오히려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品目別 輸入規模는 1990年代에 들어와서 꾸준히 유지되어 왔고, 그 輸入額이 해당품목의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다소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表 6> 美國의 VER에 의한 品目別 輸入規模 現況

(單位: 백만달러, %)

	1986年	1988年	1990年
鐵鋼	6,369(75.0)	7,536(71.9)	6,848(75.3)
工作機械	703(60.9)	589(46.3)	624(62.3)
自動車	21,061(46.5)	19,858(42.3)	19,500(42.7)
纖維	11,997(61.0)	13,794(59.0)	16,476(59.0)
肉類	(1,108(45.2)	1,495(53.3)	1,668(55.6)
小計	41,238(54.8)	43,272(50.9)	45,116(52.0)
(總輸入比重)	(10.7)	(9.3)	(8.8)

註: ()에는 該當品目的 全體 輸入에 대한 規制輸入의 比重(%)임.

資料: GATT,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U.S.A., November 1991.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때 美國政府가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호하였고, 그에 따른 國際貿易規範의 脫線行爲는 美國이 주도하여 協定을 체결한 國家 뿐만아니라 世界 餘他國家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美國의 貿易規制制度에 의한 調査, 判定過程에서 美國은 해당 輸出國과의 協商을 통하여, 美國政府에 의한 公式的인 調査, 被害判定, 規制措置의 施行을 정지하는 대신, 輸出國의 自發的으로 輸出을 규제하도록 유도해 왔다.

美國政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産業에 輸出自律規制措置를 適用 實施한 實證的인 分析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纖維産業部門: 纖維部門의 保護는 非關稅貿易規制의 완벽한 실례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 纖維類 및 衣類貿易에 대한 國際的 規制는 先進國 纖維類産業의 構造調整을 통하여 同 部門의 漸進的으로 保護를 완화한다는 명분하에 1960年代 初 限時的이고 一時的인 手段으로 사용할 것으로 하여 短期綿織物協定(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STA)을 채택하여 시작하였다. 이러한 協定은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연장하여 長期的인 手段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規制의 對象이 확대되어 1974年 多者間纖維協定(Multi-fibre Arrangement:MFA)의 制定과 1977年, 1981年, 1986년에 同 協定의 改正으로 協定의 期間이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美國은 MFA와 [1956年 農業法] 第 204條에 근거하여 輸入國과

輸出國間에 체결된 雙務的 輸出自律規制協定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1년에는 38개국에 적용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美國의 纖維類와 衣類輸入物量의 약 85%수준인 103억 환산평방미터(Square Meter Equivalent;SME)가 MFA회원국으로부터 輸入되었으며, 특히 중국, 대만, 홍콩 및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으로부터의 輸入이 약 40%인 49억 SME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美國은 先進國(日本제외)으로부터 纖維類 輸入에 대하여 雙務協定을 추구하지 않는 반면에 開途國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GATT의 最惠國待遇의 原則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各國의 纖維産業의 構造와 各國의 交渉力 등에 따라 雙務間 纖維協定은 對象品目과 쿼타量 및 運用條件 등이 매우 상이하어 심한 交易歪曲效果, 특히 開途國의 纖維類 輸出構造에 불리한 效果를 초래하고 있다.

美國의 纖維類部門에 있어서 輸出自律規制措置에 의한 厚生費用은 다른 産業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이것은 自動車産業의 輸入規模에 비하여 3/4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厚生費用이 높다는 사실은 總厚生費用의 比率이 輸入供給의 無限彈力性을 갖고 있는 自動車産業部門보다 纖維類産業部門에 있어서 歪曲費用이 더 높은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輸出自律規制措置에 의한 輸入規制를 제거하였을 경우에 纖維類産業部門에서 厚生利益이 약 11.92십억달러로 발생할 것으로 경험적 분석에 의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1985年 保護水準으로 纖維類産業, 鐵鋼産業 그리고 自動車産業에 있어서 쿼타의 年費用 推定이 20십억달러에서 22십억달러라고 했을 때 纖維類産業이 차지하는 規模는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鐵鋼産業部門: 美國의 鐵鋼産業의 輸入規制는 1960年代 中盤 美國鐵鋼協會가 鐵鋼輸入에 대한 關稅引上을 요구한데서부터 본격화하여, 1868年 존슨 行政府에 의하여 최초로 輸出自律規制協定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12.7백만톤의 鐵鋼輸入을 制限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日本과 유럽에 각각 41%를 할당하였고 나머지 18%는 世界 餘他國家들에게 할당되어 졌다. 美國은 공식적으로 단지 日本과 유럽生産者들과 輸出自律規制協定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日本과 유럽生産者들과 輸出自律規制協定을 갱신하기 전에 發動價格制度(Trigger-Price Mechanism;TPM)라는 道具를 도입하여 美國政府는 계속하여 對美 外國鐵鋼輸出을 制限하여 왔다.²⁸⁾ 1984년에 第 1次 輸出自律規制協定(Voluntary Restraint Agreement;VRA)이 체결되었으며 1989년에 이 協定이 수정 연장되었다. 레이건 美 大統領은 1984年 9月 輸入쿼타 혹은 輸入關稅 引上과 같은 공식적인 輸入規制措置가 美國의 利益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主要 對美 鐵鋼輸出國들과 VRA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 VRA 프로그램에서 美國內 鐵鋼輸入市場세어를 1984년의 26%에서 21%수준 아래로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고, 1989年 7月 美 大統領은 전반적인 鐵鋼輸入量을 美國內 市場占

27) Jaime de Melo and D. Tarr, "Welfare Costs of U.S. Quotas in Textiles, Steel and Auto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2, No. 3, (August 1990), p. 493.

28) Joseph McKinney and Keith A. Rowley(1989), op. cit, pp.70-71.

Jonathan and Haughton and Balu Swaminathan(1992), op. cit, pp.98-100.

有率을 18.4%로 낮추어 규제하고, 각국의 貿易歪曲의 價行을 제거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美國內 鐵鋼消費者들에게 적절한 原資材를 供給하기 위하여 年 1%까지 그 比率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鐵鋼貿易自由化프로그램을 통하여 美 貿易代表部(USTR)에 鐵鋼 輸出國들과의 協定을 수정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VRA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진되는 過程에서 나타난 實證的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984年 VRA의 履行으로 美國 鐵鋼輸入市場占有率은 VRA를 체결하지 않는 非規制國에 의하여 크게 增加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非規制國(非-VRA)들은²⁹⁾ 1984년에 약 4백만톤에서 1988년에 6.5백만톤으로 美國에 鐵鋼을 수출할 수 있었다. 반면에 VRA國家들로부터 美國의 鐵鋼輸入은 이 기간동안 20백만톤에서 15.4백만톤으로 減少하였다. 1990년에 VRA國家들은 對美 鐵鋼輸出이 13.5백만톤이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非-VRA國家들은 4.4백만톤이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⁰⁾

VRA쿼타의 구속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전형적인 結果는 輸出規制를 條件으로한 各各의 鐵鋼範疇內에서 高附加價值 製品의 輸出比率이 增加한다(VER의 高級化效果). 그 結果 輸入價格의 上昇은 VRA國家들이 生産한 鐵鋼製品을 國內 또는 非-VRA國家의 鐵鋼製品으로 대체하도록 美國 消費者들에게 影響을 주게된다. 그리고 美國 生産者들은 높은 價格과 增加된 輸入物로 인한 需要增加에 반응하게된다. VRA의 初期 年도 동안 쿼타의 不足은 國內 뿐만아니라 美國 鐵鋼輸入 價格을 인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VRA適用 國家들로부터의 鐵鋼輸入이 1988年과 1989年 VRA 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VRA쿼타에 의한 價格效果는 무의미하였다. 그러나 VRA는 특정 鐵鋼製品에 대해서는 輸入減少와 價格上昇을 가져왔다. 달러의 平價切下와 外國 鐵鋼需要의 增加와 같은 요소는 이러한 기간동안 美國市場에서 발생된 價格增加 現象을 설명하는데 매우

〈表 7〉 美國 鐵鋼産業의 VRA 프로그램에 의한 輸出入效果

(單位 : 백만달러, 1986年 基準)

效 果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輸出 減少額	258.4	672.9	699.5	95.2
輸入 減少額	332.4	991.8	963.6	117.3
總販賣 減少額				
需要彈力性이	590.0	1,664.7	1,663.1	212.5
0인 경우				
需要彈力性이	1,923.6	5,069.69	4,905.6	573.5
1인 경우				

資料 : U. S. International Commission, *The Effects of the Steel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 on U. S. Steel-Consuming Industries*, May 1989.

29) 對美 主要 非-VRA에 의한 對美 主要 鐵鋼供給國家는 캐나다, 스웨덴, 대만,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고 싱가포르 이다.

30) Robert Carbaugh and Darwin Wassink(1991), op. cit, p.80.

중요하다. 달러가平價切下됨으로써 外國生産者들은 보다 낮은 수익성하에서 판매하고, 활동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價格上昇은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表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VRA의 초기 단계 동안 발생한 價格上昇은 鐵鋼消費者들간에 균일하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價格上昇은 自動車, 設備機械와 같은 대규모 鐵鋼購買者들에 비하여 金屬模型과 같은 소규모 購買者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균일하지 않는 것은 鐵鋼이 어떤 방법으로 판매되어지는가의 차이점에서 반영되고 있다. 대규모 鐵鋼輸入業者는 전형적으로 장기계약(즉, 1年以上)을 체결하고, 價格은 그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어진다. 소규모 輸入業者들은 賈買時期에 支配되는 現物市場價格에서 鐵鋼을 구입하게 된다. 現物價格은 長期契約 價格보다 비교적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게다가 80年代末 매우 빠르게 價格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88年 減少된 輸出規模와 增加된 輸入規模가 前年度에 비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또한 減少된 總販賣規模도 수요탄력성에 관계없이 1987년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美國의 鐵鋼市場이 위약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日本과 유럽과 같은 外國市場에 비하여 美國에서의 낮은 價格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VRA쿼타가 1985-1987年 동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그 후 다소 약화되었다.³¹⁾

〈表 8〉 美國의 鐵鋼 VER 부과에 따른 經濟厚生效果

(單位 : 백만달러, 1987年 基準)

年 度	國內生産者 利 益	國內消費者 利 益	政 府 利 益	外國生産者 利 益	死重 損失	美 國 利 益
1969	2,410	-5,610	60	2,447	692	-3,140
1970	1,297	-2,952	25	1,397	223	-1,630
1971	550	-1,373	12	741	70	-810
1972	2,445	-6,528	110	3,253	719	-3,972
1973	2,483	-6,442	102	3,316	540	-3,857
1974	983	-3,506	52	2,246	225	-2,471
1982	111	-470	10	336	13	-348
1983	614	-2,076	44	1,320	99	-1,418
1984	306	-1,161	24	797	35	-832
1985	1,750	-6,454	147	3,957	600	-4,557
1986	859	-2,780	52	1,729	140	-1,869
1987	614	-1,789	29	1,086	60	-1,146
合 計	14,422	-41,140	667	22,625	3,425	-26,051
平 均	759	-2,165	35	1,191	180	-1,371

資料 : J. Houghton and B. Swaminathan(1992), "The Employment and Welfare Effects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Steel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1955-87".

31) R. Carbaugh and D. Wassink(1991), op. cit, pp.81-82.

그리고 VRA쿼타에 의하여 國內鐵鋼과 輸入鐵鋼에 대하여 價格을 상승시키는 현상을 가져오고 下部構造(downstream)의 鐵鋼關聯産業에 대하여 높은 生産費用을 초래한다(貿易轉換效果). 만약 美國生産이 世界價格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높은 生産費用은 鐵鋼에 의해 製造된 製品의 最終消費者들에게 轉嫁되어진다. 또한 쿼타의 拘束力은 生産不足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 鐵鋼消費者들의 견해는 VRA가 市場의 供給不足 현상을 초래하고 특정 시장에서는 鐵鋼 消費價格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부족한 鐵鋼 供給은 政府에 의해서 美國 鐵鋼消費者들의 부족한 供給量 충당하게 되었다.

결국 美國政府는 VRA에 의한 數量規制가 鐵鋼輸出國에게 안정적인 市場占有率을 보장해 줌으로써, 外國의 鐵鋼輸出企業에게 수익을 높여주고 결국 新製品開發을 가능케 함에 따라 美國鐵鋼業界에는 逆效果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表 8>에서 보는 바와같이 美國이 VER를 賦課함으로써 美國內 消費者費用이 年間 약 2.2십억달러를 발생시켰고, 이 중에서 國內 鐵鋼生産業者들에게 8억달러의 이득을 보았으며, 外國 供給業者들에게는 1.2십억달러에 달하는 이득을 발생시켰고, 2억달러가 死重損失(deadweight loss)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經濟的 厚生效果는 年平均 1.37십억달러에 이르는 純費用을 발생시킨 것으로 實證的인 分析에 의하여 추정된다.³²⁾

3. 自動車産業部門: 美國의 自動車産業은 1970年代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승용차를 生産하여 美國內 自動車市場 占有率을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1979年 2차 석유파동에 의하여 소형 승용차에 대한 需要移動으로 美國 自動車産業에 고용된 총 일백만명중에서 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失業者로 부상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에 日本의 美國內의 市場占有率은 급격하게 增加하였고, 美國의 生産量은 떨어지게 됨으로써, 美國 自動車産業의 保護을 위하여 日本에 대한 政治的인 爭點化을 요구하게 되었다.³³⁾ 따라서 日本 自動車生産業者는 1981年 4月 1日에서 1983年 3月 31日까지 對美 自動車 輸出限度를 總 1,832,500臺로 규제하는 內容의 輸出自律規制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美國에 승용차 1.68백만臺(이 숫자는 前年度에 비하여 淸初年度의 쿼타가 14만臺 減少), 다용도차량 82,500臺,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70,000臺의 輸出을 制限하였다. 그 후 輸出自律規制는 연장되어 1984年 4月에서 1985年 3月까지 2.016백만臺의 制限限度가 增加되었다. 이러한 輸出自律規制의 延長은 계속되어 日本政府는 1985年 4月에서 1988年 3月까지 每年 2.506백만臺에 달하는 輸出規制를 행하여 왔다. 1991年の 경우 日本은 수출한도를 승용차 2.3백만臺 및 밴 12만臺로 규제하였다. 실제로 최근 몇 年間 日本에서 美國으로 수출되는 차량대수는 規制限度보다 수십만대씩 적은 수준이었으며, 1992年 4月 日本 政府는 日本 自動

32) Jaime de Melo and David Tarr (1990), op. cit, pp.489-497.

J. Houghton and B. Swaminathan (1991), op. cit, pp.107-109.

33) Paul R. Krugman and Maurice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2nd ed.),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1991, pp.199-200.

Martin Wolf (1991), op. cit, pp.89-90.

34) Robert C. Feenstra, "Quality Change under Trade Restraints in Japanese Auto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3, No.1, 1988, p.136.

車의 對美 輸出減少勢와 美國內의 自動車産業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規制限度를 향후 1.65백만臺로 축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美國의 自動車産業에 대한 輸出自律規制措置를 부과함으로써 美國의 經濟的 厚生效果에 관한 實證的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輸出自律規制措置에 의한 厚生水準을 價格效果 側面에서 분석한 결과 Jaime de Melo and D. Tarr³⁵⁾에 의하면 美國이 輸出自律規制措置에 의한 虧타을 부과하지 않으면 美國의 厚生利益이 7.5십억달러(1984年基準)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W. Ethier는 美-日間의 自動車 輸出自律規制 1次協定에 의하여 美國 消費者들에게 9.94억달러에 달하는 費用을 발생시키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에서 소형 자동차 輸入規制에 따른 석유수입액이 21백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E. Dinopoulos and M. E. Kreinin³⁶⁾의 분석에서는 1982年에서 1985年 사이에 美國 總輸入의 價格指數(달러기준)가 5%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自動車産業의 輸入價格指數는 오히려 7%까지 상승하였다. 이것은 수입된 모든 自動車의 輸入價格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반영된다. 더욱 특이한 현상은 1980年과 1984年 사이에 유럽(독일, 스웨덴)에 대한 自動車의 總輸出價格指數는 30%까지 하락하였는데 반하여 유럽으로부터의 美國 輸入價格指數는 47%까지 상승하였다. 1984年에 美國 消費者들은 美國政府의 日本 自動車에 대한 輸出自律規制 賦課로 약 2.423십억달러의 厚生損失(日本 生産者들의 利益)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品質改善에 대한 계산 제외), 반면에 輸出自律規制를 부과하지 않는 유럽에 대해서는 약 3.438십억달러의 厚生損失(유럽 生産者들의 利益)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品質改善 계산 포함). 그리고 死重損失은 3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美國의 生産者들에게는 단지 2억달러에 달하는 利益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美國의 社會的 費用은 2.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實證的 分析에 의하여 추정된다(1983-84年동안). 美國의 厚生損失은 1983年과 1984年 日本으로부터의 損失보다 유럽으로부터의 厚生損失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日本에 비하여 유럽이 品質 高級化過程에 의한 質的인 改善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³⁷⁾ Robert C. Feenstra(1984)³⁸⁾에 의하면 輸出自律規制措置로 인하여 1980年에서 1982年동안 日本의 對美 自動車 輸出에 미치는 영향을 히도닉 回歸接近方法과 散布度を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日本으로부터 輸入한 自動車의 價格上昇중 2/3가 品質改善의 高級化現狀에 의해 나타났으며, 나머지 1/3은 消費者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品質變化에 의한 價格上昇인 것으로 추정된다.

輸出自律規制의 賦課로 인하여 나타나는 輸出國의 規制品目이 高附加價值品目으로 상품을 전

35) Jaime de Melo and D. Tarr(1990), op. cit, pp.492-496.

36) Elias Dinopoulos and Mordechai E. Kreinin, "Effects of the U.S.-Japan Auto VER on European Prices and on U.S. Welfa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No. 3, August 1988, pp.484-491. (table 1, 3, 7, 8, 9. 참조)

37) Heinz Gert Preusse(1991), op. cit, pp.13-14.

38) R.C. Feenstra, "Automobile Price and Protection: The U.S.-Japan Trade Restraint," *Journal of Policy Modelling* 7, 1985, pp.49-68.

환시키는 高級化效果(upgrading effect)를 가져오게 한다. 輸出自律規制로 輸出可能量이 制限되게 되면 輸出國의 輸出業者는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高級品の 輸出을 상대적으로 增加시키게 된다. 따라서 輸出業者는 동일한 量의 輸出 로 인하여 보다 많은 附加價值(輸出額)를 稼得할 수 있고, 相對國의 需要가 존재하는한 高級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할 것이다.

<表 9> 美國의 日本 自動車輸入에 따른 價格 및 品質指數

(單位: 달러, %)

	1979年	1980年	1981年	1982年	1983年	1984年	1985年
승용차							
모델數	21	24	24	24	26	29	31
單位當價格	4,946	5,175	6,221	6,834	7,069	7,518	8,038
(變化率)		(4.6)	(20.0)	(10.0)	(3.4)	(6.4)	(6.9)
價格指數	96.8	100.0	119.8	129.1	131.2	138.8	148.3
(變化率)		(3.3)	(19.8)	(7.8)	(1.6)	(5.8)	(6.9)
單位當品質	5,002	5,124	5,511	5,896	6,257	6,488	6,709
(變化率)		(2.4)	(7.6)	(7.0)	(6.1)	(3.7)	(3.4)
品質指數	98.7	100.0	107.4	112.8	117.3	121.3	125.4
(變化率)		(1.3)	(7.4)	(5.0)	(4.1)	(3.4)	(3.4)
트럭^a							
모델數	10	10	11	11	10	11	12
單位當價格	4,804	4,937	6,298	6,419	6,089	6,261	6,339
(變化率)		(2.8)	(27.6)	(1.9)	(-5.1)	(2.8)	(1.2)
價格指數	97.2	100.0	127.5	131.8	125.3	127.3	129.7
(變化率)		(2.9)	(27.5)	(3.4)	(-4.9)	(1.6)	(1.9)
單位當品質	4,952	4,943	5,041	5,275	5,276	5,274	5,620
(變化率)		(-0.2)	(2.0)	(4.6)	(0.0)	(0.0)	(6.6)
品質指數	99.8	100.0	102.1	106.4	105.5	104.7	112.3
(變化率)		(0.2)	(2.1)	(4.2)	(-0.8)	(-0.8)	(7.3)
美國							
消費者價格指數(變化率)	88.1	100.0	110.4	117.1	120.9	126.1	130.6
		(13.5)	(10.4)	(6.1)	(3.2)	(4.3)	(3.6)

註: a. 多用途車 包含

資料: R.C. Robert, "Quality Change in Japanese Auto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3, 1988, p. 138.

R. C. Feenstra³⁹⁾에 의하면 品質高級化을 위한 質的인 改善이 1980年과 1985年동안에 日本 自動車 生産者들에 의해 도입되어졌고, 이것은 쿼타에 기인한 價格上昇이 實質 單位當 價格의 變化보다 더 컸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R. C. Feenstra는 美國에서 日本으로부터 수입한

39) Robert C. Feenstra(1988), op. cit, pp.137-145.

승용차 및 트럭을 대상(1979년-85년동안)으로 品質變化를 히도닉회귀분석(hedonic regression analysis)에 의하여 추정한 결과, 승용차의 單位當 品質은 31% 增加하였으며, 品質指數는 25.4%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승용차 價格增加의 1/2에 해당한다. 트럭인 경우 品質指數는 1980년-1984년동안 전체 4.9%가 增加하였고, 1984년-1985년동안에는 7.3%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品質高級化는 輸出自律規制의 첫 해인 1981년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全期間을 통하여 單位當 品質의 變化和 品質指數의 變化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單位當 品質의 變化가 다소 빠른 속도로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9〉 參照). 또한 이것은 消費者들이 自動車 生産業者들의 品質高級化(quality upgrading)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消費者들의 모델 선택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輸出自律規制는 전적으로 品質의 高級化過程에 의하여 퇴색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輸出自律規制의 政策的 含蓄性

傳統인 貿易政策 道具인 關稅 또는 쿼타에 비하여 數量메카니즘에 의한 짧은 기간내에 輸入 規制效果를 나타낼 수 있는 輸出自律規制措置는 非透明性, 雙務性, 差別性, 非公開性 그리고 數量自律規制의 貿易政策的인 側面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經濟的인 問題에 초점을 맞추어 져야할 것이다.

貿易政策的인 道具로써 灰色貿易制限措置의 일종인 輸出自律規制는 輸出國의 輸出管理를 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地代所得의 移轉을 目的으로한 經濟的 理由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輸入國立場에서 본다면 經濟的인 理由에서 보다 政治的인 理由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政治的인 觀點에서 輸出自律規制의 措置로인하여 혜택을 받는 主要 受惠者는 輸入國 政府이다. 반면에 主要 被害者는 輸入國의 消費者로서 輸入國 政策當局의 意思 決定으로부터 배제되어진다는 점이다.⁴⁰⁾ 輸出自律規制協定에 의하여 輸出國과 輸入國이 공모에 의한 談合行爲는 GATT의 規定에 違背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輸出國에 비하여 그것을 실제로 야기시킨 輸入國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輸出自律規制協定은 일반적으로 小規模의 輸出國家들에 대한 輸入大國의 政治的인 주장과 經濟的인 힘(power)을 나타낸다. 이것은 國際規範指向的인(rule-oriented) 貿易體制로부터 힘의 指向的인(power-oriented) 體制로 전환을 의미한다. 더구나 貿易差別政策은 힘의 威力에 기초를 두고 있다.⁴¹⁾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GATT의 國際規範 즉 無差別的인 世界貿易秩序의 履行에 대한 信賴性을 서서히 훼손시켜왔다. 특히 輸出自律規制는 非競爭的인 輸出市場세어制度和 같은 경직적인 방법으로 多數의 開發途上國들에게 固着시켜줌에 따라 開發途上國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40) Kent Jones, "The Political Economy of Voluntary Export Restraint Agreement," *Kyklos*, Vol. 37, 1984, p. 98.

41) Michel Kostecki(1989), op. cit, p. 440.

纖維, 鐵鋼 등의 製品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했다.

따라서 輸出自律規制는 대다수의 開發途上國家들에게 다소 보상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할지라도 自律規制協定은 資源의 配分을 왜곡시키고, 對內的인 經濟政策의 不均衡問題를 조성 하게 됨으로 厚生의 純損失을 수반하게 된다. 小規模의 國家들은 無差別의인 貿易體制下에서의 交易成果를 비교해 볼때 輸出自律規制協定으로부터의 利益은 결코 득할 수 없다. 經濟政策에 있어서 輸出自律規制의 差別的인 手段은 企業, 企業의 集團 그리고 政府에 대한 利益의인 偏見을 갖게 하고, 강압적인 所得再分配 또는 所得發生機會을 야기시킨다. 중요한 문제는 差別性, 非透明性 그리고 國際的인 再分配의 條件下에서 긍정적인 效果를 가질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效果가 經濟的인 前提條件을 무시함으로써 厚生水準을 改善할 수 있는지에 있다. 그래서 自由貿易原則에 대한 保護主義者의 抵抗으로부터 야기된 損害는 두가지 方法에서 최소화되어진다. 첫째로, 保護의 範圍가 制限되어 있다면 遞減의 效果가 실현되고, 둘째 그 效果는 단기간내에 일시적인 制限手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실현되어진다. 따라서 輸出自律規制의 貿易政策은 政治經濟的인 理論 形態에 기초를 둔 短期的 費用最小化 手段으로 간주되어진다. 이것은 輸出自律規制가 貿易政策의 短期的인 手段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政治經濟的인 觀點에서 輸出自律規制의 使用은 설득력 있게 정당화되어질 수 없고,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貿易政策은 無差別 關稅手段에 비하여 劣位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輸出自律規制措置에 의한 輸入國과 規制된 輸出國 그리고 非規制된 餘他 輸出國에 있어서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交易條件 改善내지는 貿易利益으로 厚生水準의 增加 또는 社會的 費用이 減少한다할지라도 장기적으로 交易當事國 모두가 결국 社會的 費用을 增加시킴으로써 被害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輸出自律規制의 手段이 短期性이라는 것은 理論的으로 입증될 수도 없고 現實的으로 輸出自律規制協定이 갱신되고 연장됨으로 長期的인 性格을 표출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輸出自律規制 手段의 中長期的인 現상으로 간주되어진다면 로비자들이 協商過程에 익숙해지고, 行政府를 상대로 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知識을 축적하여 개선함으로써 保護의 擴大을 가속화시키고, 로비자들의 經費가 減少되어 自由貿易關係는 더욱 遼遠해진다.

輸出自律規制의 貿易理論的인 側面에서 政策的인 意味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輸出自律規制는 財貨가 상호 대체되어질 때 制度變化와 같은 效果를 가지기 때문에 輸入業者(國內 生産業者)와 輸出業者(外國 生産業者)의 價格과 利益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代替財下에서 輸出自律規制에 대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價格上昇에 의해서 消費者의 厚生水準을 減少시키는 반면에 國內 生産業者들의 利益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후자로인하여 國家的인 利得이 전자에 따른 損失보다 크다면 國家的인 厚生水準은 增加할 것이다. 그 결과로 輸出自律規制는 결코 最善의 貿易政策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國家的인 利益을 갖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輸出自律規制가 國內外的 生産業者들의 利益을 상승시킴으로써 外國 生産業者로부터

國內 生産業者에게 利益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國內 生産業者의 利益 增加는 독자적으로 國內 消費者들의 支出에서 발생되고, 消費者는 또한 外國 生産業者의 利益 增加에 대해서도 지불하게 된다. 그러므로 輸出自律規制는 利益轉換의 不在로 인하여 國家的인 厚生水準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國內生産이 輸出自律規制로 인하여 떨어진다면 厚生水準 또한 減少할 것이다. 國內生産의 減少는 輸出自律規制에 기인하여 充分條件이나 國家的 厚生水準을 減少시키는 것은 必要條件이 아니다. 輸出自律規制로 인하여 厚生水準을 減少시키는 充分條件은 두개의 價格이 상승할 때 世界的 厚生水準을 減少시킨다는 것이다.⁴²⁾

따라서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保護主義的인 制度的 裝置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保護主義者들이 輸出規制制度를 상대방에게 위협하거나 또는 貿易制裁를 가할 목적으로 포획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正常的인 方法的 節次에 따라 문서화하여 제도화시킨다.

둘째, 輸出自律規制를 실시함과 동시에 GATT規定 第 19條에서 고려된 바와 같은 保護裝置로써 緊急輸入制限措置에 의한 非差別的인 關稅를 부과하고, 그 關稅에 의한 財政收入은 産業構造調整 支援을 위한 財源으로 활용하되, 유사한 關稅收入으로 共同的 基金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保護的인 性格을 띤 關稅는 명백한 적용기간을 설정하여 점차 축소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렇게함으로써 非差別性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며 安全裝置로써의 保護措置를 투명하고 잠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輸入國은 輸出自律規制가 야기시킨 輸出國의 經濟的 地代所得을 회수함에 따라 확실한 利益을 득할 수 있고, 그 關稅收入으로 構造調整의 支援金으로 사용함으로써 一石二鳥의 利益을 누리게 될 것이다. 輸出國이 상실한 地代所得은 다른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保護措置가 잠정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保護措置의 再實施의 可能性이 構造調整 支援政策의 導入으로 최소화되어진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輸出自律規制에 대한 效率性提高을 위한 貿易政策의 努力으로 GATT에 의한 非差別的인 緊急輸入制限措置로 회귀할 수 있다면 특히 開發途上國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며, 差別的인 輸出自律規制의 選擇的 對象國家로 標的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VI. 結 論

輸出自律規制는 貿易障壁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복잡성을 띤 貿易政策의 道具인 것임에 틀림 없다. 더구나 다른 貿易障壁에 비하여 輸入規制가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남으로 輸入國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현상은 重商主義의 經濟思想에서 國富가 輸入減少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믿는 경향으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輸入國(대부분 先進

42) Kala Krishna, (1985), op. cit., pp. 251-270.

國) 産業構造調整의 遲延에 의하여 나타난 經濟的인 현상을 國際規範으로부터 적용을 받지 않는 교묘한 방법과 政治的 經濟的인 힘에 의존하여 책임을 轉嫁시키는 方法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輸出自律規制의 選擇的이고 差別的인 對象國家는 예상하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國內經濟政策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資源配分에 따른 歪曲現狀으로 社會的 費用을 부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厚生水準을 減少시키게 된다.

政治經濟的인 힘에 의한 輸出自律規制措置는 集團 내지는 個別 國家의 利己主義的인 傾向으로 유도하게 됨에 따라 相互互惠主義의 原則에 의한 國際貿易秩序를 유지해온 GATT의 體制에 위협을 가중시키게 되고, 集團의 利益을 위한 로비활동은 직접적으로 非生産的인 利益追求行爲를 취하게 됨으로써 窮乏化成長의 結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輸出自律規制는 貿易政策의 道具로써 最善의 方法이 아니기 때문에 次善의 方法에 의한 厚生水準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次善의 方法으로 GATT規定에 위배되는 輸出自律規制와 같은 貿易政策의 發展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유의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신중하게 조사케 하고 特定の 輸出自律規制協定에 관한 被害效果의 國際的인 刺戟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監視機構가 그 협정에 따른 貿易效果와 厚生費用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輸出自律規制措置의 使用은 엄격한 節次와 基準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輸出自律規制協定의 擴散이 중지 또는 후퇴하게 되고 貿易規定과 節次에 있어서의 非對稱性을 제거하게 된다. 끝으로 各國의 利害關係가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貿易障壁은 透明性和 公開的이고 無差別的인 方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制度的인 裝置가 공식적인 國際協商테이블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世界 各國들의 共存共榮하기 위해서는 國際經濟秩序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힘의 指向的인 것으로부터 規範指向的인 國際經濟의 環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相互 國家間的 持續的인 協助와 努力이 요구된다.

Summary

A Study on Economic Effects and Empirical Analysis fo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Kim Yeoung-Choon

This paper studies the economy theoretical effects and empirical analysis of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especially the impact of the VERs on U.S. textiles, steels and autos. In recent years import countries interested in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from import competition have gradually shifted from the use of general tariff restrictions to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mong non-tariff barriers. Despite the efforts of the GATT members to eliminate the elements of both discrimination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from the trade policies of its contracting parties, these features obstinately persist in the form of voluntary export restraints.

The preference fo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may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re may concern political economic issues in 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The preference of voluntary export restraint agreement is that exports can be bought off and the patterns of decision making which are entailed reduce the political cost of protection. Neither economic nor political arguments can be found to convincingly justify the use of VER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it is obvious that VERs are inferior to the global, non-discriminating tariff measures. In order to facilitate a negotiated restriction on exports, VERs contain built-in compensation for the exporter in that they allow exporters to raise the price of the export goods and thereby capture a portion of the scarcity premium associated with the trade restriction. For this reason, domestic consumers lose more from VERs than from import tariffs and empirical studies have documented their heavy economic welfare cost.

Voluntary Export Restraints have been shown to raise prices and profits of both the domestic and foreign firm since they have effects like those of a regime change when goods are substitutes for one another. An argument which might be made for VERs with substitute goods is that while a VER lowers consumer welfare by raising prices, it also raise the profits of domestic producers (short-term aspects). However, in the long-term, welfare effect of importing countries, restricted exporting, unrestricted exporting countries must be lower because VERs resulted from distortion of international allocation resources,

and quantitative measures hinder the movement of relative prices between the domestic economy and the world market.

Finally, any progress towards the elimination of VERs as an instrument of trade policy will require domestic policies that diminish the motives for protectionism in general. Internal measures to promote the mobility of labor and other resources across industries and regions, along with policies supporting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would prevent the conditions that so often lead to protectionist policies. Stronger efforts to educate the public on the issues would also help, especially if the cost of specific protectionist policies to consumers, including the transfers to foreign and domestic producers, were a matter of public record.